

투자위험등급 :
3등급
[중간 위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알리안츠 브릭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_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안츠 브릭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_재간접형]**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리안츠 브릭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_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의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lobalinvestors.co.kr)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참고)
4. 작성 기준일 : 2012년 5월 25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5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조좌까지 모집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6. 책임투자운용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알리안츠 브릭스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_재간접형]	58733
A	58883
C	37600
E	16564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조좌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지역	펀드 개요
해외 주식형 펀드 20~30%	MSCI Brazil Index ETF	브라질	비용 전 수익률이 브라질 시장의 성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ETF
	Dit China Fund	중국	중국 내 설립된 기업 또는 매출액과 수익의 주요 부분을 중국에서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본 증식 추구
	JP Morgan Russia B Acc	러시아	러시아(구 소련지역 포함)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과 예탁증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장기적으로 자본 성장을 추구
	JF India B Acc	인도	인도 증권 및 인도 주변국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
	RCM BRICs Fund	브릭스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
해외 채권형 펀드 40~50%	PIMCO Total Return Bond	미국	최하 65%를 다양한 만기의 채권에 투자하며 금리 예측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평균 듀레이션은 3~6년 범위 내 조정
	PIMCO Global Bond	글로벌	세계 주요 통화의 투자등급 채권으로 구성된 분산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
	PIMCO Emerging Mkt Bond	신흥시장	펀드 순자산의 80%이상을 발행자가 경제적으로 이머징마켓에 관련되거나 연결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국내채권 10~20%	통안채 (Duration: 0.32)	국내	신용등급 A-이상의 우량 채권에 투자
유동성 10~20%	국내 / 해외 유동성	국내	콜론, 예금 및 선물 위탁증거금 등

6. 집합투자업자 :

회 사 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알리안츠타워 ☎ 02-2071-99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브릭스집합 투자증권 30% 이하	법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u>가. 제 1 호에서 정의한 집합투자증권 중 브릭스 국가 주식(브릭스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증시에 상장된 주식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이하“브릭스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u>
② 국내외 채권	50%이하, 주식관련사 채 35% 이 하	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 71 조제 4 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해외채권”이라 한다).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발행 주체가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투자자격등급 A-이상이어야 하고, 발행주체가 외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투자자격등급 BBB-이상인 채권(이하 “외국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과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 (이와 동일한 성질의 상품으로써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에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⑦ 증권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수탁회사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④까지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⑥부터 ⑧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국내외 채권형 펀드(이머징마켓 포함), BRICs 지역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및 뮤추얼펀드(신탁재산의 30% 이하)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증권 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특성상 적당한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없어 비교 지수가 없으므로 투자 판단 시 한층 더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① 펀드운용계획
- 1) 전략적 자산배분 (Strategic Allocation)
국가, 지역, 국채, 회사채, 유동성 등 전략적으로 투자대상 및 지역에 따른 자산배분
 - 2) 운용사 / 펀드 선택(Fund Selection)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가진 운용사 펀드 선택
 - 3)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성과평가를 통한 펀드 투자비중, 포트폴리오 재조정(Rebalancing)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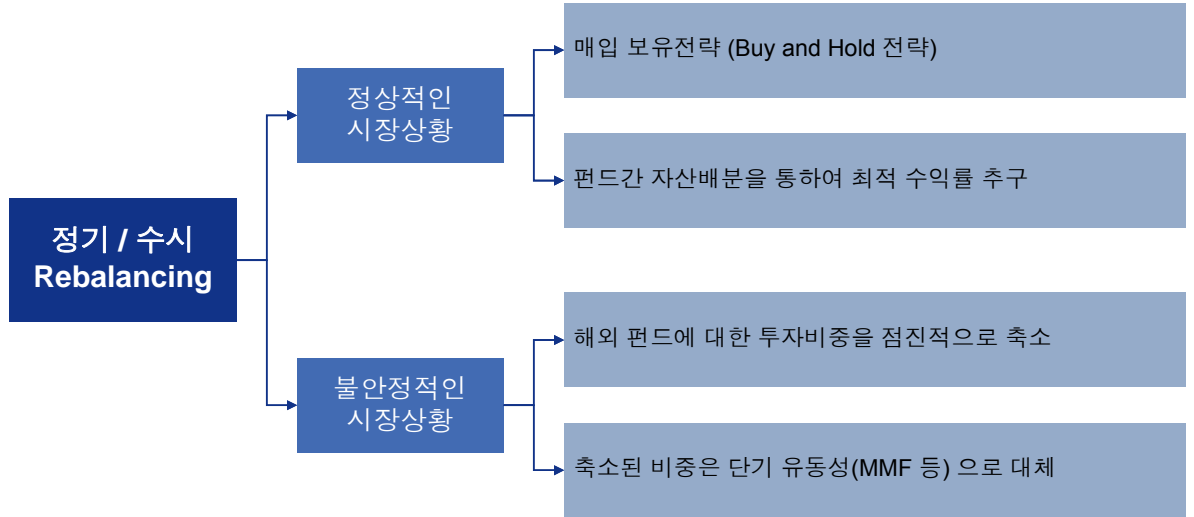
<< 자산배분 전략 >>

20~30% BRICs 주식	40~50% 해외 채권	10~20% 국내 채권	10~20%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시장 전망에 따라 국가별 자산배분 ▪ 해당 국가에 주식에 투자하는 다양한 국내외 펀드의 성과 분석 ▪ 선별된 핵심 펀드에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채권펀드(PIMCO 펀드 등)를 분석 ▪ 최적의 자산배분(안)에 따라 해외 채권펀드에 투자 ▪ 선별된 핵심 펀드에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채 위주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론, 예금 및 선물 위탁증거금 등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 지역	펀드 개요
해외 주식형 펀드 20~30%	MSCI Brazil Index ETF	브라질	비용 전 수익률이 브라질 시장의 성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ETF
	Dit China Fund	중국	중국 내 설립된 기업 또는 매출액과 수익의 주요 부분을 중국에서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본 증식 추구
	JP Morgan Russia B Acc	러시아	러시아(구 소련지역 포함)에 설립된 회사의 주식과 예탁증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자본 성장을 추구
	JF India B Acc	인도	인도 증권 및 인도 주변국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
	RCM BRICs Fund	브릭스	이 투자신탁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자본이득을 추구
해외 채권형 펀드 40~50%	PIMCO Total Return Bond	미국	최하 65%를 다양한 만기의 채권에 투자하며 금리 예측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평균 듀레이션은 3~6년 범위 내 조정
	PIMCO Global Bond	글로벌	세계 주요 통화의 투자등급 채권으로 구성된 분산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
	PIMCO Emerging Mkt Bond	신흥 시장	펀드 순자산의 80% 이상을 발행자가 경제적으로 이머징마켓에 관련되거나 연결된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국내채권 10~20%	통안채	국내	신용등급 A-이상의 우량 채권에 투자
유동성 10~20%	국내 / 해외 유동성	국내	콜론, 예금 및 선물 위탁증거금 등

② 펀드재조정 전략



③ 투자프로세스 Top-down 방식의 자산 배분



- ※ 상기의 전략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 관리

해외투자자산 부분에 대해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 등으로 헷징을 합니다. 미국달러화, 유로화 등에 대해서 환헤지 전략을 사용하며, 해당 통화로 보유한 투자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으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 할 수는 없습니다.

※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 등 외화 자산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수익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3. 수익구조

국내외 채권형 펀드(이머징마켓 포함), BRICs 지역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및 뮤추얼펀드(신탁재산의 30% 이하), 국내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재간접형 증권 투자신탁(Fund of Funds)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외투자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 등으로 헷징을 합니다.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 등에 대해서 환헤지 전략을 사용하며, 투자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환헤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으로 환율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환위험은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 및 환헤지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고, 환헤지 전략의 유효성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성과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주식(해외 자산 포함)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이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 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채권은 미래 <u>이자율</u> 변동에 따라 <u>가격변동위험</u> 과 쿠폰의 <u>재투자위험</u> 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은 단기의 상환만기를 가진 채권에 비하여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가치의 변동이 크게 나타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 대부분이 상환되는 시기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자본손실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일정 매기마다 수령하는 이자액(Coupon)을 다시 재투자 했을 때의 수익률 변동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중간에 수령하는 이자액을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권시장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으므로, 만약 지급 받은 이자액을 재투자하는 시점에 시장

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 투자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대상 국가 위험	<p>이 투자신탁은 해외의 주식 및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u>특히 브릭스 국가, 아시아국가 등의 이머징 시장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시장, 선진국가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u></p> <p>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국가 정책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p>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주식예탁증권 포함) 및 해외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주로 브릭스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30%이하 투자하고, 이머징 마켓 채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도 투자하는 상품으로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중간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의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는 투자설명서상의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판매회사에서 분류하여 사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운용전략 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형 포함)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 1) 투자위험등급분류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 2)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주 3)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 주 4)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 주 5)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주 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 7)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6.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2012.05.20 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억원)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김은우	79년생	운용역	13개	2,209억	서울대학교 응용학과, KAIST 경영대학원 금융공학 2007.01~2008.08 교보투자신탁운용 인덱스/퀀트운용팀 운용역 2008.08~현재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주식운용2팀 주식운용역 등 경력 6년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2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해당 사항없음

주3)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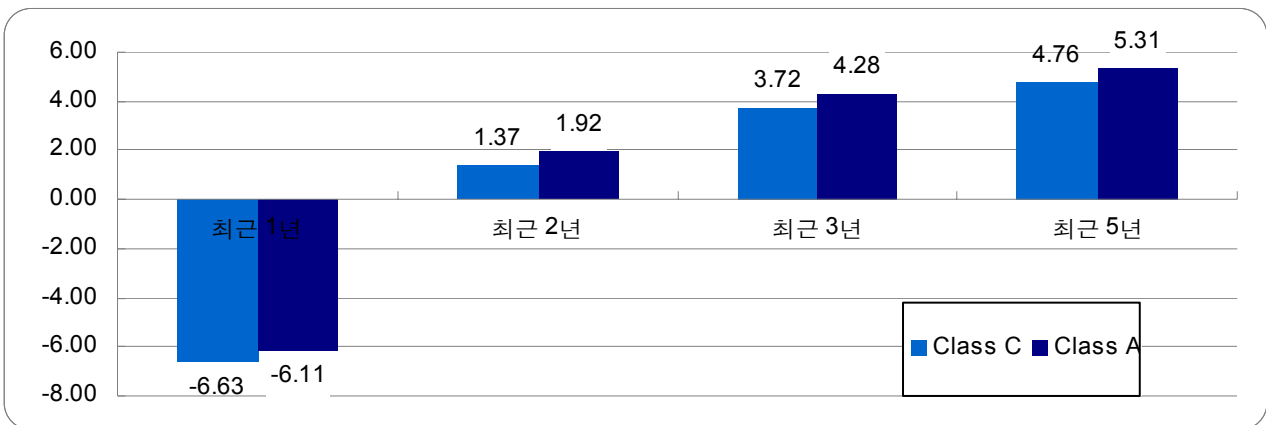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0/10/01~ 2011/09/30	2009/10/01~ 2011/09/30	2008/10/01~ 2011/09/30	2006/10/01~ 2011/09/30	
Class C	2003-07-04	-6.63	1.37	3.72	4.76	6.42
비교지수	2003-07-04	-	-	-	-	-
Class A	2006-07-28	-6.11	1.92	4.28	5.31	5.70
비교지수	2006-07-28	-	-	-	-	-

주 1)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특성상 적당한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없어 비교 지수가 없으므로 투자 판단 시 한층 더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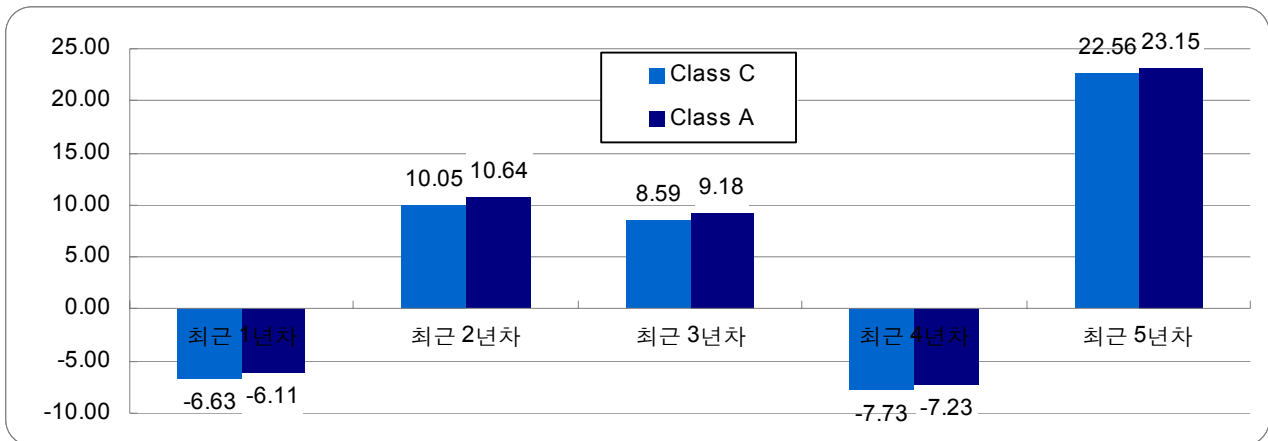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추이)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	-------	-----------	-----------	-----------	-----------	-----------

		2010/10/01~ 2011/09/30	2009/10/01~ 2010/09/30	2008/10/01~ 2009/09/30	2007/10/01~ 2008/09/30	2006/10/01~ 2007/09/30
Class C	2003-07-04	-6.63	10.05	8.59	-7.73	22.56
비교지수	2003-07-04	-	-	-	-	-
Class A	2006-07-28	-6.11	10.64	9.18	-7.23	23.15
비교지수	2006-07-28	-	-	-	-	-

주1)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운용 특성상 적당한 비교지수를 선정할 수 없어 비교 지수가 없으므로 투자 판단 시 한층 더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환매시
	합계	납입금액의 1%	
Class C 및 Class E 수익증권	선취/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합계	투자기간별 환매수수료	

주) 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 부과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Class A	Class C	Class E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터넷 가입자 전용	

집합투자업자	0.435	0.435	0.435	매3개월
판매회사	0.500	1.050	0.84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0.015	0.015	0.015	
보수합계	0.980	1.530	1.320	
기타비용	0.012	0.012	0.012	발생 시
총보수·비용	0.992	1.542	1.332	매3개월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1.900	2.456	2.246	매3개월
증권거래비용	0.063	0.063	0.063	발생 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10.7.4~2011.7.3)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Class E 수익증권은 미설정인 관계로 Class C 수익증권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 간접투자기구)에서 부과하는 보수(약 0.84%)를 포함하여 추정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다만, 피투자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10.7.4~2011.7.3)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Class E 수익증권은 미설정인 관계로 Class C 수익증권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수익증권	99	298	710	1,149	2,365
Class C 수익증권	-	258	793	1,353	2,879
Class E 수익증권	-	236	726	1,243	2,659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별(Class A와 Class C)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0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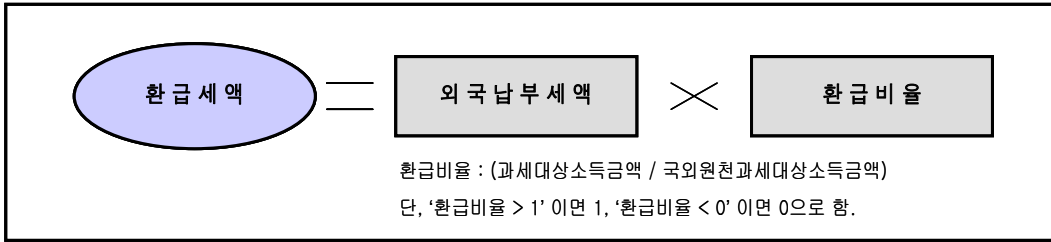
주 3)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 과세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 하지만 투자신탁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세법의 변경 및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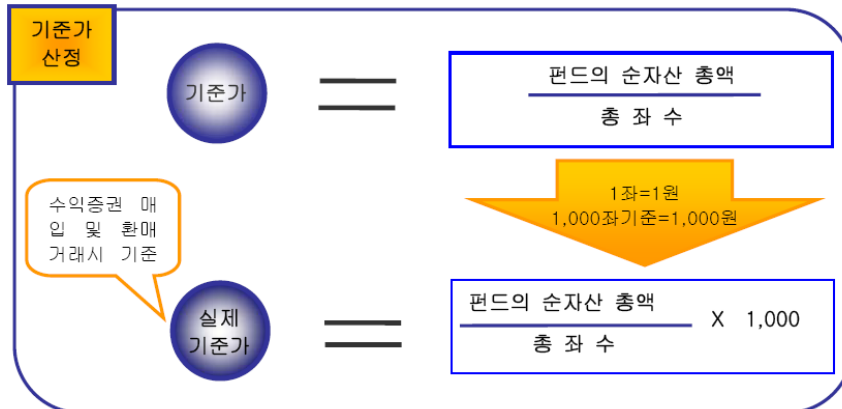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lobalinvestors.co.kr)·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홈페이지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기준가격 산정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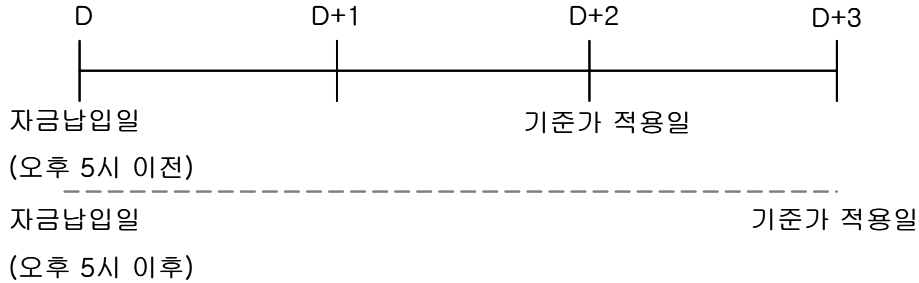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Class C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Class E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9영업일(D+8)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10영업일(D+9)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항 목		대차대조표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2011.07.03	2010.07.03	2009.07.03
운용자산		8,884,368,216	18,064,354,889	27,821,081,526
현금및예치금		561,728,844	4,416,289,239	4,366,236,540
현금및현금성자산		107,609,747	3,862,696,822	3,477,297,027
증거금		438,312,809	549,179,572	865,279,678
기타예금		15,806,288	4,412,845	23,659,835
대출채권		732,000,000	0	0
콜론		732,000,000	0	0
유가증권		7,590,639,372	13,648,065,650	23,454,844,986
채무증권		1,009,424,990	0	3,838,809,291
수익증권		6,581,214,382	13,648,065,650	19,616,035,695
기타자산		116,371,783	40,172,061	5,919,038,950
정산미수금		6,785,000	32,232,000	22,697,000
미수이자		2,817,802	513,704	20,911,988
선급비용		9,004,120	0	0
선납세		7,298,706	7,426,357	0
기타미수입금		90,466,155	0	5,875,429,962
자 산 총 계		9,000,739,999	18,104,526,950	33,740,120,476
기타부채		1,881,987,281	70,863,247	5,850,590,043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5,848,900,000
수수료미지급금		1,154,231	1,451,117	1,690,043
기타미지급금		1,880,833,050	69,412,130	0
부 채 총 계		1,881,987,281	70,863,247	5,850,590,043
원 본		7,118,752,718	15,502,529,151	26,951,036,010
이익잉여금		0	2,531,134,552	938,494,423
자 본 총 계		7,118,752,718	18,033,663,703	27,889,530,433
부채 및 자본 총계		9,000,739,999	18,104,526,950	33,740,120,476
총좌수	운용	7,118,752,718	15,502,529,151	26,951,036,010
	Class C	7,343,637,047	14,897,515,326	25,175,389,480
	Class A	1,027,279,803	2,547,478,041	4,726,812,471
기준가격	운용	1,000.00	1,163.27	1,034.82
	Class C	1,000.00	1,000.00	928.67
	Class A	1,000.00	1,000.00	933.79

나.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2010.07.04 - 2011.07.03	2009.07.04 - 2010.07.03	2008.07.02 - 2009.07.03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1,338,030,489	3,078,514,468	-3,132,390,330	
투자수익	111,752,777	250,733,614	373,863,083	
이자수익	67,076,413	205,591,527	332,392,733	
배당금수익	44,676,364	45,142,087	41,470,35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336,509,641	11,079,719,078	29,570,548,905	
지분증권매매차익	346,337,447	1,578,583,688	382,246,593	
채무증권매매차익	1,091,593	18,871	58,951,777	
파생상품매매차익	3,921,983,000	7,212,941,000	22,898,635,000	
외환거래매매차익	696,440,980	993,593,929	3,802,246,250	
지분증권평가차익	370,656,621	1,294,581,590	95,976,863	
채무증권평가차익	0	0	87,824,131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2,244,668,291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133,497,844	8,282,523,139	33,096,647,714	
지분증권매매차손	4,232,965	125,951,160	2,306,937,775	
채무증권매매차손	551,320	81,556,064	0	
파생상품매매차손	3,013,941,100	6,750,482,700	30,025,903,000	
외환거래매매차손	516,206,114	1,051,419,570	328,654,193	
지분증권평가차손	0	37,768,271	435,152,746	
채무증권평가차손	719,570	0	0	
외환거래평가차손	597,846,775	235,345,374	0	
기타운용수익	23,265,915	30,584,915	19,845,396	
운 용 비 용	1,763,630	2,593,067	6,978,735	
매매수수료	90,753	23,200	8,253	
기타운용비용	1,672,877	2,569,867	6,970,482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운용	1,336,266,859	3,075,921,401	-3,139,369,065
	Class C	961,519,025	2,261,241,495	-3,140,773,090
	Class A	172,447,694	480,054,623	-462,059,225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운용	118.45	148.32	-94.95
	Class C	83.86	115.43	-101.70
	Class A	100.57	133.19	-82.70